

#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51
----------	-----------

제 출 자	거 창 군 수
-------	---------

## 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영유아보육법」(「2016년 보육사업 안내」), 대법원판례 등에 부합되도록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 등의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보육대상 규정을 변경함(안 제4조)

(현행)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12세 이하 저학년 보육

(변경)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

※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7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

### 나. 근무상한 연령을 삭제함(안 제14조)

(현행) 원장은 60세,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57세

(변경) 연령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

※ 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정년 등 연령에 관한 조항이 없고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

※ 대법원판례 2007추134 : 법령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 것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 하는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

### 다. 법제처 정비대상 및 규제개혁 대상 개정함(안 제9조 ~ 제11조)

○ 수탁자 의무 중 일부, 수탁자의 행위의 금지, 계약의 해지 조항 삭제함

※ 상위법령이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삭제,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내용 삭제함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7조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  
대법원판례 2007추134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2016. 7. 18. ~ 8. 08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있음(미반영)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###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의견 제출자	제출의견	검토의견	처리결과 (통보내용)
이승진 등 33명	안 제14조 근무상한 연령 삭제와 관련하여, 공무원 정년에 맞추어 60세로 개정 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위 법령인 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보육 교직원 연령에 관한 조항이 없고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 하는 규정이 없음</li> <li>- 대법원판례(2007추134)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원장과 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규제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는 권리 제한으로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되어 무효</li> <li>- 따라서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함</li> </ul>	의견 미반영

## 거창군 조례 제 호

###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4조(보육대상)**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.

제7조제3항 중 “보육위원회”를 “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보육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8조 후단을 삭제한다.

제9조제4항·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제10조·제11조를 삭제하고,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하고, 제14조의2를 제11조로, 제15조를 제12조로, 제18조·제19조를 제13조·제14조로, 제21조·제22조를 제15조·제16조로 한다.

제11조(종전 제14조의2)제2항 중 “제14조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 전에 임기”를 “임기”로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보육대상)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.</p> <p>1. 0세 ~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</p> <p>2.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 (이하 "보육위원회"라 한다)의 의결에 의한 12세 이하의 저학년 아동</p>	<p>제4조(보육대상)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<u>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.</u> 다만,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.</p>
<p>제7조(위탁운영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<u>보육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7조(위탁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거창군 <u>보육정책위원회 (이하 "보육위원회"라 한다)</u>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위탁운영기간)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제14조의 원장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	<p>제8조(위탁운영기간) ----- ----- -----&lt;후단 삭제&gt;</p>
<p>제9조(수탁자의 의무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·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거창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9조(수탁자의 의무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④ (현행 제6항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행위의 금지)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</li> <li>2. 재산의 처분 행위</li> <li>3.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 권의 허용</li> <li>4. 재산이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</li> </ol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11조(계약의 해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했을 때</li> <li>2.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보육 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</li> <li>3. (삭제 2012.11.28)</li> <li>4.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</li> </ol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12조(임면) (생략)</p>	<p>제10조(임면) (현행 제12조와 같음)</p>
<p>제14조(근무상한 연령) ① 공립 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,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원장 : 60세</li> <li>2.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 : 57세</li> </ol> <p>②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4조의2(원장의 임기) ① (생략)</u>  <u>② 제14조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(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한다)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11조(원장의 임기) ① (생략)</u>  <u>② 임기</u>-----  -----  -----<u>사람</u>-----  -----<u>사람</u>-----  -----</p>
<p><u>제15조(전보) (생략)</u></p>	<p><u>제12조(전보) (현행 제15조와 같음)</u></p>
<p><u>제18조 ~ 제19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13조 ~ 제14조 (현행 제18조제19조와 같음)</u></p>
<p><u>제21조 ~ 제22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15조 ~ 제16조 (현행 제21조제22조와 같음)</u></p>